

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물납부동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제1호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- (제3호) 판결문·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	<input type="checkbox"/> 인용조문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 제10조 인용조문 삭제 ⇒ 종전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을 본문에 직접 규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부동산가액 평가 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 기준일까지 확정된 가액 	<input type="checkbox"/> 감정평가액 기준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부동산가액 평가 기간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

□ 개정 내용

- 「지방세법」 제10조를 인용하는 조문을 삭제하고, 종전 인용조문에 따른 부동산 가액 기준을 본문에 직접 규정
- 부동산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,
 - 감정평가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부동산 가액 평가 기간에 해당할 경우로 명확히 규정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